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윤덕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·사용 근거를 마련하고,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·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, 철도운영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,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철도안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21819호, 2026. 6. 16. 공포, 2026. 12. 17. 시행)됨에 따라, 철도운영자의 음주·약물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철도운영자의 철도종사자 음주·약물 사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안 별표 6 제2호 개정)

철도운영자의 음주·약물 위반 철도종사자 신고의무가 신설됨에 따라,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

나. 철도시설의 조사·유지관리 등을 위해 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
(안 별표 6 제2호 개정)

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거부·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

다. 음주·약물 위반 철도종사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의 위임규정 정비(안 제62조제2항제3호 개정)

현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·약물 단속 권한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(시행령 제62조)되어 있는 바, 단속 업무와 과태료 처분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 검토 요청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2항제3호 중 “제2항제7호·제8호·제9호·제10호”를 “제2항제7호·제7호의2·제8호·제9호·제10호”로 한다.

별표 6 제2호허목부터 도목까지를 각각 고목부터 로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 로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보목부터 우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허목과 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위반	2회위반	3회이상 위반
허. 법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7호의2	150	300	450
모. 법 제4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·일시사용 또는 죽목·토석,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82조제4항제1호의2	30	60	90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2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	제62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」 제40조에 따른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 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82조제1항제14호, 같은 조 제2항제7호 · 제8호 · 제9호 · 제10호,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	3. ----- -- 제2항제7호 · 제7호의2 · 제8호 · 제9호 · 제10호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617